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795
----------	-------

발의연월일 : 2023. 9. 27.

발 의 자 : 윤두현 · 김예지 · 권명호
류성걸 · 박덕흠 · 백종헌
이만희 · 박정하 · 박성민
서일준 · 김승수 · 구자근
양금희 · 노용호 · 이철규
최연숙 · 정희용 · 안병길
홍석준 · 정경희 · 이양수
정진석 의원(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 또는 왜곡 등의 방식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허위조작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음. 허위조작정보는 기존의 정보와 허위의 사실을 교묘하게 혼합하는 형태로 생산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판별하는 것이 쉽지 않고, 한번 생산되면 인터넷상에서 급속도로 확대·재생산된다는 특징을 가짐.

허위조작정보는 미디어 환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으며, 허위조작정보의 대상이 된 개인은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으로 고통을 받

게 되므로 이에 대한 유통방지 대책 마련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 지정의무 등을 부과하고,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포함시키며, 허위조작정보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해당 침해 사실을 인식한 사람은 누구든지 해당 정보의 삭제·반박내용의 게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허위조작정보를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4조의7 및 제44조의11 신설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허위조작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를 말한다.

제44조의4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허위조작정보

제44조의7제1항에 제6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 및 제6호의3의”를 “, 제6호의3 및 제6호의4의”로 한다.

- 6의4.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 정보

제5장에 제44조의11 및 제44조의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11(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 등) ① 누구든지 입력된 작업을 자동적으로 반복하여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시판에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

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허위조작 정보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된 허위조작정보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누구든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허위조작정보의 삭제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위조작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해당 조치의 내용 및 이유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한 제2항 또는 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⑦ 그 밖의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12(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 ① 제44조의11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이하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는 제44조의11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허위조작정보의 삭제·임시조치 등 유통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수행한다.

③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의 수 및 자격요건,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중 “불법촬영물등의”를 각각 “불법촬영물등 및 허위조작정보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책임자의”를 “책임자 및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의”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유통방지를”을 “및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허위조작정보의 임시조치 등의 횟수, 내용, 처리기준, 검토결과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제6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6(알고리즘 자료의 제출) 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기사의 배열에 관한 알고리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알고리즘 제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4조의11을 위반하여 입력된 작업을 자동적으로 반복하여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시판에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재한 자

제76조제2항에 제4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5. 제44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3.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① ----- -----. 1. ~ 13. (현행과 같음) 14. <u>“허위조작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를 말한다.</u>
② (생 략) 제44조의4(자율규제) ① (생 략)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 2. (생 략) <u><신 설></u>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의4(자율규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2. (현행과 같음) <u>3. 허위조작정보</u>
③ (생 략)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③ (현행과 같음)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

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6의3. (생략)

<신설>

7. ~ 9. (생략)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④ (생략)

<신설>

-----.

1. ~ 6의3. (현행과 같음)

6의4.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 정보

7. ~ 9. (현행과 같음)

② -----
-----,
제6호의3 및 제6호의4의----

-----.

③·④ (현행과 같음)

제44조의11(허위조작정보의 유통 방지 등) ① 누구든지 입력된 작업을 자동적으로 반복하여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시판에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적으로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
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허위조작정보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된
허위조작정보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누구든지 해
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허위조작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제44조의2제1항 후
단,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
용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위조작정보
의 삭제등을 요청받은 정보통
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해당 조치의 내용 및 이유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한 제2항 또는 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⑦ 그 밖의 허위조작정보의 유

<신 설>

제64조의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
무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통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12(허위조작정보 유통방
지 책임자) ① 제44조의11제2
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
기 위한 책임자(이하 “허위조
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
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
임자는 제44조의11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허위조작정
보의 삭제·임시조치 등 유통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수행한다.

③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
임자의 수 및 자격요건, 허위조
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에 대
한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의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
무 등)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이하 “투명성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기울인 일반적인 노력에 관한 사항

2. 3. (생략)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불법촬영물등
및 허위조작정보의-----

-----.

1. -----불법촬영물등 및 허위조작정보
의-----

2. 3. (현행과 같음)

4. -----책임자 및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의-----

5. -----및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6. 허위조작정보의 임시조치 등의 횟수, 내용, 처리기준, 검토결과 및 처리결과에 관한

②·③ (생략)

<신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신설>

사항

②·③ (현행과 같음)

제64조의6(알고리즘 자료의 제출)

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기사의 배열에 관한 알고리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알고리즘 제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벌칙) ①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44조의11을 위반하여 입력된 작업을 자동적으로 반복하여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시판에 허위조작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재한 자

4. ~ 7. (생략) ② (생략) 제76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의4. (생략) <u><신설></u> ③·④ (생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4의4. (현행과 같음) <u>4의5. 제44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u> ③·④ (현행과 같음)
--	---